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청 소 년 복 지 지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과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 나.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체력검사·건강검진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 사무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개정)
- 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함(안 별표2)

라. 과태료 부과처분 및 가중처분의 적용시점과 누적차수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용과 준수에 혼란 방지(안 별표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 당 없 음

다. 합 의 : 0000000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제4항에서 정하지 않은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1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의 제1호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	------

가.센터장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u>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u>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u>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u> 나) <u>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u> 7)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행정업무 수행 직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마. 생활지도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의 제1호 일반기준 가목 후단 중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 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를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가목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의1.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제4항에서 정하지 않은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 ----- ----- ----- -----

현행	개정안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1의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u>보건위생물품</u> 지원 2. ~ 9. (생략)	----- ----- ----- ----- 1. (현행과 같음) 1의1. -----<u>생리용품</u>----- 2. ~ 9. (현행과 같음)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자격기준</th></tr> <tr> <td>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td><td>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td></tr> </table>	구분	자격기준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자격기준</th></tr> <tr> <td>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td><td> 1) ~ 4) (현행과 같음) 5)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7조에 따른 <u>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u> 6)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u> </td></tr> </table>	구분	자격기준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1) ~ 4) (현행과 같음) 5)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17조에 따른 <u>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u> 6)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u>
구분	자격기준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구분	자격기준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1) ~ 4) (현행과 같음) 5)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17조에 따른 <u>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u> 6)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u>								

현행	개정안
5)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u>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u> <u>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u> 7) ----- ----- 가) ----- ----- ----- 나) ----- ----- -----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u>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u>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 ----- -----기간의 <u>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u>

현행	개정안
<u>으로 하여 계산한다.</u> <u><신 설></u> 나.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u>날을 기준으로 한다.</u> <u>가의1.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u> <u>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u> <u>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u> <u>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u> <u>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u> <u>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u> <u>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u> 나.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연락처	(02) 2100 - 6272